

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[별표 3] <개정 2022. 12. 27.>

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의 재직연수 환산율표

구 분	경 력	재 직 연 수 환 산 율
일반직공무원 경력 (전문경력관 및 임기 제공무원 경력은 제 외한다)	1. 6급 상당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경력 2. 6급 상당 이상의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	100%
유사 경력(연구직 공무원에게만 적용 한다)	1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 및 대학원에서 해당 계급 에 상응하는 직위 이상의 직위에서 같은 연구 분야에 근무한 경력 2.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해당 계급에 상응하는 직위 이상의 직위에서 같은 연구 분야에 근 무한 경력	80% 50%